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1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 의 자 : 김도읍 · 김현아 · 이현재

김성원 · 이명수 · 정태옥

민경욱 · 윤영석 · 유기준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u>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p>